

'액트' 문서 공방...영풍·MBK "적법한가" vs 고려아연 "정상적 계약"(종합)

등록 2026.05.26 17:59:46



[서울=뉴스시스] 김선웅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도잇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은 정상적인 계약까지 문제 삼으며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6.05.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스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도잇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은 정상적인 계약까지 문제 삼으며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은 지난주 고려아연에 대해 컨도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도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문서 제출명령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이뤄졌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지난해 공개된 컨도잇 내부 자료에는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들이 포함됐으며 컨도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컨도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파트너스가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 계약마저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해당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실제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풍·MBK 측은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 등 회사의 주주친화 노력과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인 계약마저 왜곡하며 또다시 정략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이어가며 소모적 논쟁을 조장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영풍·MBK 측의 행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바"라며 "앞으로도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